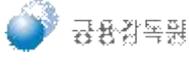
	<h1>보 도 자 료</h1>				
		보도	'21.12.24.(금) 조간		배포

책 임 자	금융위 FIU 가상자산검사과장 이 동 욱(02-736-1740)	담 당 자	김 영 준 사무관 (02-736-1741)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이 길 성(02-3145-7500)		김 준 환 사무관 (02-736-1742)
			조 성 조 사무관 (02-736-1743)
			박 상 현 팀장 (02-3145-7502)

제 목 :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9.25~12.23)

- ▶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됨
- ▶ **5개** 사업자는 **유보·재심사** 결정 ('22.1월말 예정)
- ▶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함

◆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으며, 향후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점검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1 심사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9.25~12.23)
 -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업자,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입니다.
-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경제, 법률, IT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되었고, **5개**사는 **유보**되었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결과



심사통과

29개사



신고철회

8개사



유보·재심사

5개사

①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철회)

* 철회 사업자는 12.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함

-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유보),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13개 보관업자 중, 5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하였습니다. (철회)

*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님

-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 (유보)

구분	구분	신고접수	심사통과	신고철회	유보·재심사
거래업자	원화마켓	4	4	0	0
	코인마켓	25	20	3	2
보관업자(지갑·보관 등)		13	5	5	3
합계		42	29	8	5

①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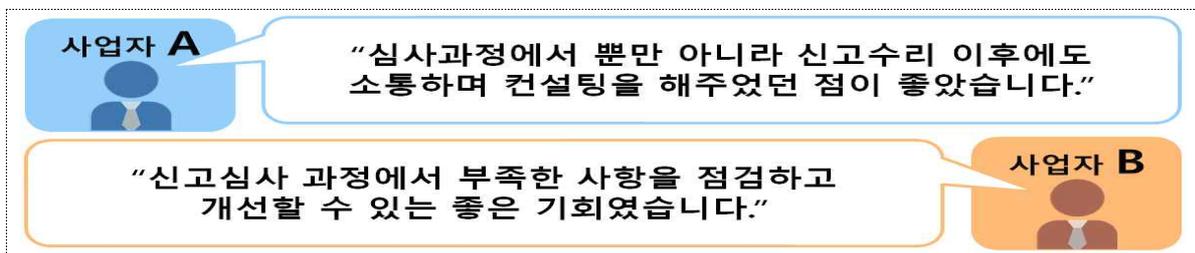
- **처음 도입**된 사업자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매뉴얼(‘21.2월) 및 컨설팅을 제공(‘21.6월)하고,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하여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로 정리되었습니다.

* 유보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 결과 신고 사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21.7월)토록 하여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또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하여, 3개월 동안 **未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하였습니다.

*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 (9.21일) 1,134억원 → (12.21일) 91억원

- 신고 접수부터 영업 준비까지 **소 과정**에 걸쳐 사업자의 애로 사항을 청취·소통하면서 **신고제도 안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특히, 신고수리 이후 첫 시행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있어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적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② 사업자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금번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인력·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 되었으며,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 **보완·개선**해야 합니다.

○ **AML 시스템 미흡** 사유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된** 사업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습니다.

-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할 것을 자금세탁 감독 차원에서 지도하였습니다.

③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차원**에서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선·보완을 유도**하였음

- 따라서,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금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판단 하였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 스테이킹, DeFi*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

* NFT: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 토큰) /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제공시**,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특히,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획득**해야 가능하며, **미획득시 미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①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FIU는 '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입니다.

② 신고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22년부터 반기별 조사 예정)

③ 심사 유보된 사업자의 재심사는 '22.1월말 진행됩니다

- 금번 심사에 유보된 5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는 1월말 진행될 예정이며, AML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조속히 보완하여 재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2.1월말)

④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는 형사벌* 대상임을 주의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금법 §17)

-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및 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FIU ☎02-736-1745 / 금감원 ☎02-3145-7504 / 경찰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참고>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FIU 홈페이지 참조)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p>☞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p> <p>http://www.fsc.go.kr</p>	<p>금융위원회 대 변 인</p> <p>prfsc@korea.kr</p>	 <small>법률관리청 콜센터</small>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21.12.23일 기준)

구 분	서비스명	법인명
원화마켓 거래업자 (4개사)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빗
	코인원	(주)코인원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코인마켓 거래업자 (20개사)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고팍스	(주)스트리미
	비둘기지갑	차일들리 주식회사
	프로비트	오션스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코어닥스	(주)코어닥스
	플랫폼타익스체인지	(주)플랫폼타익스
	한빛코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
	오케이비트	(주)오케이비트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처스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코인엔코인	(주)코인엔코코리아
	보라비트	(주)뱅크
	캐셔레스트	주식회사 뉴링크
	텐앤텐	주식회사 텐앤텐
	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 (5개사)	코다(KODA)	(주)한국디지털에셋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헥슬란트	(주)헥슬란트
	마이키플월렛	코인플러그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